

###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토스준비법인(주)

2. 인가업무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는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은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0. 11. 1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부칙 재정비

- 상위법령의 시행('20.12월)에 맞춰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부 항목(실험복, 보호 신발)에 대한 경과조치 수정
- 법 시행 전 등록된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과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7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인가(허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0-2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9층
4. 대 표 자 : 류희인
5. 주요사업
  - 승강기 안전산업의 경영합리화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승강기 안전산업의 해외진출 진흥과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승강기 관련 신문, 협회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출판사업
  - 승강기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교육
  - 승강기 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
  - 승강기 교육·연구기관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
  - 회원 공제, 복리증진 사업 및 우수 회원의 표창
  - 승강기 우수기술, 부품의 추천 및 전시 사업
  - 관련 증명 발급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